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투자기업 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등〉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28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 (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4
2.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등(안 제21조제7항·제8항, 제 27조제1항제11호 신설, 제2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5항제3호 및 제 37조제1항제5호 신설)	7
3.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사회적 책임(안 제21조의2 신설)	13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
3. 회부연월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미비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수혜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폐업 사전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제5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 (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환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법 제14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자유치기반조성’(4901-302)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음(참고 1).

그런데 동 법률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철회하거

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제14조의2제5항)¹⁾하도록 하지만,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 등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금지원의 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는 환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공시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0조는 구체적인 환수금액·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령에서도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표 2] 현금지원 환수 관련 현행 법령 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0조(취소·철회·감액·환수) ① 현금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 촉구,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현금지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등(안 제21조제7항·제8항,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제2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5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안 제21조제7항·제8항,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사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며,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5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u>이행</u>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략)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폐업 사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1조제7항의 폐업 사전신고에 <u>관한 사항</u> 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이행 및 사실관계 확인</u>-----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⑤ ----- ----- ----- ----- ----- ----- -----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따라 우리 정부로부터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참고 1)를 부여받고 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폐업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그 사실관계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신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기업의 폐업에 적용되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와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노동자 보호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됨.

[표 4] 상법 및 세법 상 폐업 절차

< 상법상 폐업 절차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 신문 공고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신고 → 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 후 청산종결 등기로 진행(제517조 이하 해산규정, 제531조 이하 청산규정 적용)

< 세법상 폐업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⑦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 5] 폐업시 노동자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회수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법적 부담(폐업 사전 신고의무)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없는 제한을 부과하는 차별적인 조치

로서 FTA, WTO 규범의 내국민대우²⁾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변동 신고와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WTO 규범의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 한-미 FTA 제11.3조 내국민대우 >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게 부여한다.

< WTO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

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사회적 책임(안 제21조의2 신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사관계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7항에 따라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사관계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기업이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폐업하면서 기존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폐업 사전신고

시에 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사관계 공정성을 위한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체계적인 이직준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적 책임”은 정의 및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중소기업부의 사회적책임경영 플랫폼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것³⁾으로 설명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합당한 정보”의 내용과 합당한 정보를 제공받는 근로자 등의 기준·범위에 대해 노사간 해석·의견이 상이할 것으로 우려됨.

즉, 개정안은 국내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폐업시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데, 사회적 책임 및 제공하여야 하는 합당한 정보의 기준·범위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기준의 책임을 요구하게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FTA, WTO 규범의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이를 규제로 인식하여 투자가 저조

3) CSR의 정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 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조직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CSR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의 발전정도, 지역사회에서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중소기업부 사회적책임경영 플랫폼 <https://www.smes.go.kr/csr/user/info/define.do>

해질 우려도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투자 기업 폐업시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⁴⁾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4) 타 부처 의견

제출기관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24.7.23)	•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 폐업시에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노력규정이란 하더라도 ‘근로자 인권보장’, ‘노사관계 공정성’, ‘합당한 정보’ 등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하면, 정보제공 대상 및 정보제공의 범위 등도 불분명하여 법률 시행시 혼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참고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은 '19년 폐지)

□ 현금지원 제도

- **(지원대상)**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수반,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 현금 지원

< 현금지원 대상 요건, 외촉법 제14조의2 >

- ① 신성장동력기술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사업장) 신·증설 (조특법 시행령 별표7)
- ②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사업장) 신·증설 (산발법 제5조)
- ③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신·증설 (소재부품특별법 별표1)
- ④ 공장(사업장) 신·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업종별 50~300명 초과시)
- ⑤ R&D 연구시설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 R&D 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 ⑥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 큰 투자(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 전환형 설비교체 투자 등)

- **(사용용도)**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설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외촉법 시행령 제20조의2)
- **(지원금액)** 투자가와 협상을 거쳐 FDI금액의 일정비율(최대 30%, 첨단산업 40%,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R&D센터 50%까지)을 지원(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 **(절차)** 외투기업 신청(투자계획서 제출) → 산업부 (평가위→한도산정위) → 외투위원회 → 계약 체결(기업↔산업부,지자체) → 현금지원 → 사후관리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및 주요 지원 실적)**

구 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 지원 실적
'20년	28,000	- (민간자본보조)	4개 기업, 280억원 집행
'21년	60,000		8개 기업, 600억원 집행
'22년	50,000		7개 기업, 500억원 집행
'23년	50,000		7개 기업, 500억원 집행
'24년	200,000		(목표) 20개 기업, 2,000억원 집행

- **(사후관리)**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 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함(외촉법 제14조의2제5항)

* ①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②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외촉법 시행령 제20조의4)

□ 입지지원 제도

- **(개요)**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제도 운영

- **(단지형)** 중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지정('94~)

- **(개별형)**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98~)

- **(서비스형)** R&D 및 서비스사업 유치를 위해 일정지역(건물포함)을 지정*('11~)

* 지정요건 : 외투자분 30% 이상, 고용기준(연구개발 5인, 금융보험업·지식 서비스·산업지원서비스·문화사업 등 15인) 이상

< 단지형 및 개별형 외투자지역 비교 >

구 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지역	● 산업단지 내	● 제한 없음 (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 외투자분 30%이상 등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 (제조업 3천만\$, 관광업 2천만\$, 물류업 1천만\$ 이상 등)
운영현황('24.7)	● 30개 단지	● 76개 지역
입지지원	●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 임대 (국비 : 수도권 30%, 비수도권 60%)	● 부지매입비 지원(요청시) (국비 : 수도권 30%, 비수도권 60%)
지정시 혜택		
조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관세 등)	● 감면요건 (제조:1천만\$ 이상, 물류:5백만\$ 이상) ● 감면기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 이내 - 관세 면제 5년	● 별도 감면요건 없음 (지정요건과 동일) ● 감면기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 이내 - 관세 면제 5년
임대료 감면	● 75~100% 감면	● 100% 감면 (필요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 **(사후관리)**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임대 수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년 이내에 계약체결 요건(외투자비율 30% 이상) 미달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허위 투자나 투자요건 미충족시 감면임대료 환수 및 정상 임대료(1%→5%) 적용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 **(토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에 외투기업이 입주할 경우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외투기업에 임대 (단지형·개별형 외투자지역)

* 예산 : ('20) 31,899 → ('21) 32,000 → ('22) 32,000 → ('23) 41,399 → ('24) 56,050백만원

- **(임대료지원)** 서비스형 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에 임대료 50% 이내에서 지방비와 매칭 지원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예산 : ('20) 73 → ('21) 106 → ('22) 95 → ('23) 84 → ('24) 84백만원